

삼파장 무전극 램프시스템이 ESCO

삼파장 무전극 램프시스템이 ESCO 자금지원 대상인지 여부

<답변>

기존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램프, 나트륨등 등)를 유도코일을 적용한 삼파장 무전극 램프시스템으로 교체할 경우 ESCO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조명 환경에서 보다 조도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또한 에너지절약 효과(사용전력 저감 및 전력비 절감)에 의해 투자비를 투자비 회수기간 동안 소비자의 별도의 부담없이 상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중앙집중식아파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ESCO 자금을 이용하여 보일러에 폐열회수장치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배기가스온도 180~200℃ 의(6t, 10t 보일러) 열교환기를 설치하여 50~60℃로 배출할 때 배기가스배출의 문제점 및 부식의 문제는 없는지요. 아울러 배기가스를 이용한 폐열회수장치의 수명은 어느 정도입니까?

2. 설치 완료 후 자본금 5억원 정도의 업체가 부도날 경우에도 아파트 측에(ESCO자금) 특별한 피해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180~200℃인 배기가스를 50~60℃까지 열교환기를 설치하여 회수할 경우, 문제점 및 폐열회수장치의 수명

- 보통 보일러 배기가스는 사용연료의 종류(B-C유, 경유, LNG 등)에 따라 회수 가능한 온도가 다릅니다.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하기 위해서 보일러의 연도에 절탄기 또는 공기에열기를 설치하여 사용연료별 회수 가능한 온도(B-C유 : 150~180℃, 경유 : 120~130℃, LNG : 80~100℃ 등)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참고치임) 범위 내에서 배기가스의 열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배기가스의 온도를 과도하게 낮출 경우 부식(저온부식-황황유 연료, 응축수에 의한 부식 등)을 일으키므로 이에 대한 조치(연도 코팅, 라이닝 등이 필요하므로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가 요구되므로 전문업체로부터 조언과 경제성분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폐열회수장치의 수명과 관련하여서는 동 장치의 사용환경 또

는 관리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적절한 기종 선택과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2. ESCO가 부도날 경우 아파트에 피해가 없는지?

ESCO사업을 추진한 ESCO가 상환기관 중 부도가 날 경우, 소비자(아파트)는 ESCO의 부도이후 상환기관 종료시까지 ESCO로부터 사후관리 또는 유지관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ESCO 사업수행 업체 선정시 해당 ESCO의 경영상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할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금 융자(에너지합리화자금)와 ESCO자금과의 관계를 알고싶습니다. 즉, 에너지사용자가 ESCO 에너지절약설비를 시설하고자 할 때, 어떤 경우에 ESCO자금을 이용하고 또, 어느 경우에 에너지합리화자금을 신청하여 사용합니까(혹시 두가지 모두 사용가능한지요)? ESCO자금을 쓸때, 이 자율은 어떻게 결정 되는지요? 에너지합리화자금을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 성과배분은 전액 에너지사용자 몫으로 될 것 같은데 맞는지요?



독자 여러분의엽서나 메일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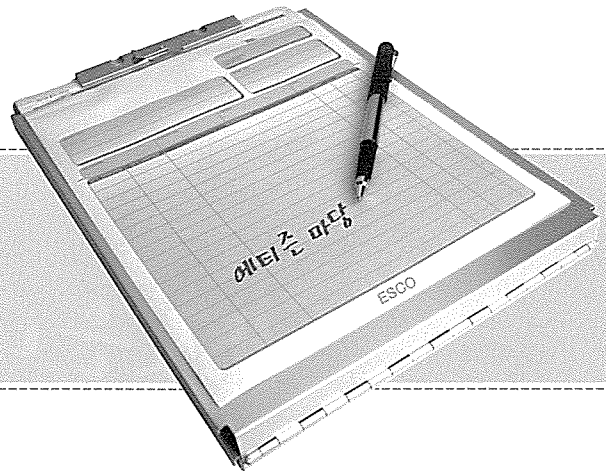
ESCO지가 독자 여러분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ESCO에 대한 각종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보하실 사항, 잡지를 읽어보신 소감 등을 적어보내 주십시오. 특히 ESCO협회의 홈페이지(www.esco.or.kr) 게시판 및 「공지사항」란을 이용하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더욱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글은 편집상 일부 수정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서울영등포구 문래동3가 55-7
문래에이스테크노타워 702호
esco편집자앞
TEL : (02)2679-6464
FAX : (02)2632-7566
w3master@energycenter.co.kr

자금지원대상인지 여부



<답변>

먼저 ESCO에너지절약설비란 것은 없으며,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18호) 상의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되는 설비의 설치사업에 대해 자금용 자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금신청의 경우는 에너지사용자가 직접 자금용 자지원을 받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에너지합리화자금(절약시설설치자금)을 이용하며,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성과배분계약 혹은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하여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신청할 경우는 ESCO자금을 이용하게 됩니다.

ESCO자금의 대출이자율은 변동금리(2004. 1/4분기 3.5%(신용대출시 최고 6.5%))와 고정금리(5.25%(신용대출시 최고 8.0%))의 두가지이며, 변동금리는 국고채(3년만기)의 수익률에 연동합니다. 에너지절약성과배분은 에너지사용자와 ESCO 간에 성과배분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에너지합리화자금(시설설치자금)을 사용할 경우는 ESCO사업이 아니므로 성과배분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얼마전 아파트 공고판에 아파트가 추위 분배기에다 자동온도 조절장치를 달면 에너지가 20%정도 절감이 되고 그 설치비용은 ESCO자금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답변>

자동온도조절밸브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에 한하여 ESCO자금이 지원

가능합니다. 자동온도 조절밸브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으나, 특성상, 난방방법, 사용지역, 거주자의 체감온도 등에 따라 에너지절감률이 달라집니다.

공동 주택 입주자입니다. 약 350 가구가 살고 100미터 이내에 2,000가구가 더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가로등 교체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하는 ESCO사업 사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ESCO사업을 이용하여 복도/가로등을 교체하는 것이 경제성이 거의 없으며 거의 주민들이 비용을 다 부담한다고 합니다. 실제 공동 주택에서 ESCO사업으로 복도/가로등을 교체한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 중 가로등 분야와 관련하여 수은등을 대체하는 메탈할라이드등과 고압나트륨등의 설치사업에 대하여 ESCO사업으로 시행시 자금용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ESCO사업용자지원을 한 사례는 없으며, 타 설비의 ESCO사업시 부대적으로 소수의 공장 내 가로등 교체에 대해서 자금 지원한 실적만 있습니다. 복도등과 관련하여 ESCO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복도등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인체감지센서등기구)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사례들은 지금까지 1건 내지는 타사업에 부대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보편적인 사례로 적용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ESCO사업추진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설비의 운영현황에 대한 정

확한 진단과 교체하고자 하는 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예측되는 에너지사용량의 정확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열병합발전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아파트내 입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 지원되는가?

<답변>

아파트에서 열병합발전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소정의 입주자 동의를 있어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병합발전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아파트내 입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의 공동의해가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내부조정을 거친 후 자금추천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분쟁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자금추천신청이 있는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동 분쟁이 해소될 때까지 자금추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